

## ■ 화제의 뉴스 ■

### 3. 서울중앙지법, '분양가 떨어지더라도 약정한 잔금은 지급해야'

홍씨는 2008년 3월 A아파트 분양권을 4억여 원에 매입하고 2010년 2월까지 잔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 그 후 같은 평형 아파트의 미분양을 원인으로, 건설사는 최초 분양가보다 20~25% 할인하여 분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.

이에 대하여 홍씨는 '잔금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'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나,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7부(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)는 "홍씨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"며 "또 약정금을 줄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"고 판단하였습니다.

#### [관련 링크]

- 법원 "아파트 분양가 떨어져도 잔금 치러야" - SBS | 2012. 9. 25.
- 법원 "아파트 분양가 떨어져도 잔금 치러야" - 연합뉴스 | 2012. 9. 25.